



관계부처
합동

보도자료

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1년 12월 31일(금)		
담당과장	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최성준 과장 (044-202-6420)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 (044-201-3364)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신용민 과장 (044-203-4263)	담당자	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윤희봉 사무관 (044-202-6425)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준 사무관 (044-201-3366)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임철성 사무관 (044-203-4263)

홈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한 '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
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임혜숙, 이하 '과기정통부'), 국토교통부(노형욱 장관) 및 산업통상자원부(문승욱 장관)는 사물정보통신(IoT) 융합기술 발전 및 홈네트워크 설치, 이용 증가에 따라 홈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 예방과 망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'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(이하 '지능형 홈네트워크 고시')'을 12월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.
 - 정부는 해킹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월패드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안전문가와 건설사, 정보통신공사사업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.
- 이번에 개정된 고시 내용은 '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, 고시 시행 이후 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받아 시행하는 건설사 등은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때, 개정된 고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개정된 주요 내용은 ①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·관리 매뉴얼 제공, ②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방법으로 세대별 홈네트워크 망 분리, ③ 기밀성, 인증, 접근통제 등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홈네트워크 장비 설치 및 ④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 설치 권고 등이다.

□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와 더불어 ‘**홈·가전 IoT 보안 가이드**’도 보완하여 보급하고,

- 건설사, 정보통신공사업자, 감리원 등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개정된 고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.

붙임: 지능형 홈네트워크 고시 개정안 1부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희봉 사무관(044-202-6446), 김준 사무관(044-201-3366), 임철성 사무관(044-203-4263)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

붙임1 **지능형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안**

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-00호

「주택법」 제2조제13호,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2조의2에 따른 「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-24호, 2020. 6. 15)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홈네트워크 설비의 기술기준”을 “홈네트워크 설비의 기술기준 및 홈네트워크 보안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하자담보 등)”을 “(유지·관리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한 자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·관리 매뉴얼을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여야 한다.

제3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홈네트워크 보안) ① 단지서버와 세대별 홈게이트웨이 사이의 망은 전송되는 데이터의 노출, 탈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하거나,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가상사설통신망, 가상근거리통신망, 암호화 기술 등을 활용하여 논리적 방법으로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홈네트워크장비는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6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세대단말기는 별표1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.

③ 홈네트워크사용기기 및 세대단말기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6에 따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로 설치할 수 있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장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술기준	제3장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술기준 및 홈네트워크 보안
제14조(하자담보 등) <신 설>	제14조(유지·관리 등) ①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한 자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·관리 매뉴얼을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여야 한다.
①, ② <생략>	②, ③ <조변경>
<신 설>	제14조의2(홈네트워크 보안) ① 단 지서버와 세대별 홈게이트웨이 사이의 망은 전송되는 데이터의 노출, 탈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하거나,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가상사설통신망, 가상근거리통신망, 암호화기술 등을 활용하여 논리적 방법으로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 ② 홈네트워크장비는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6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세대단말기는 별표1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. ③ 홈네트워크사용기기 및 세대단말기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6에 따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로 설치할 수 있다.
<신설>	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홈네트워크장비에 대한 보안요구사항(제14조의2제2항 관련) (신설)

구분	보안요구사항
1. 데이터 기밀성	<p>이용자 식별정보, 인증정보, 개인정보 등에 대해 암호 알고리즘, 암호키 생성·관리 등 암호화 기술과 민감한 데이터의 접근제어 관리기술 적용으로 기밀성을 구현</p> <p>※ 데이터의 처리(생성, 읽기, 쓰기, 변경, 삭제, 저장 등)가 아닌 단순 전송 등을 담당하는 워크그룹 스위치 등은 적용 제외</p>
2. 데이터 무결성	<p>이용자 식별정보, 인증정보, 개인정보 등에 대해 해쉬함수, 전자서명 등 기술 적용으로 위·변조 여부 확인 및 방지 조치</p> <p>※ 데이터의 처리(생성, 읽기, 쓰기, 변경, 삭제, 저장 등)가 아닌 단순 전송 등을 담당하는 워크그룹 스위치 등은 적용 제외</p>
3. 인증	<p>사용자 확인을 위하여 전자서명, 아이디/비밀번호, 일회용비밀번호(OTP) 등을 통해 신원확인 및 인증 기능을 구현</p>
4. 접근통제	<p>자산·사용자 식별, IP관리, 단말인증 등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 유형 분류, 접근권한 부여·제한 기능 구현을 통해 인가된 사용자 이외에 비인가된 접근을 통제</p>
5. 전송데이터 보안	<p>승인된 홈네트워크장비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가 유출 또는 탈취되거나 흐름의 전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송데이터 보안 기능을 구현</p>